

제87차 충북사회복지포럼

- 일시 : 2017년 2월 10일(금) 14:00-17:00
- 장소 : 충북연구원 대회의실(4층)
- 주관 : 충북연구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 일정

일 시		발 표 및 내 용
13:5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영
14:0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인사말씀 - 충북연구원장 -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 내빈소개
14:2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도민 복지의식조사 결과 - 좌장 : 심의보 회장(충북사회복지협의회) - 발표 : 최은희 연구위원(충북연구원) - 토론 : 강신옥 상임이사(청주시복지재단) 최승호 선임연구위원(충북연구원) - 질의응답
15: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ffee break
15:20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영역별 진단 및 방향 - 좌장 : 최승호 연구위원(충북연구원) -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복지 : 원광희 총괄분원장(충북연구원) □ 고용복지 : 함창모 미래전략실장(충북연구원)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복지 : 임성빈 과장(충북도청 교통물류과) □ 고용복지 : 박종효 대표(일하는 공동체) □ 종합토론 : 안종태 회장(충북사회복지사협회) - 질의응답

충북도민 복지의식 조사

최은희 연구위원(충북연구원)

* 본 발표문은 최은희 외(2016)의 '충북도민 복지의식 조사' 에서 일부 발췌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복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다양

- 복지대상과 영역의 확대, 복지비용 팽창으로 복지를 축소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인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가치관에 따라 이해가 엇갈림

□ 복지정책의 형성과 운영은 복지정치의 결과

- 복지정책의 형성과 운영은 시장의 분배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사회적·정치적 노력이며,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복지정치의 결과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을 반영함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산업화의 부산물 성격으로 국가 주도적으로 전개됨. 민주화 이후 복지제도의 비약적 발전은 있었으나 국민들의 복지의식이 복지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으며, 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 고려 요인도 아니었음

□ 복지정책 수립과정에 복지의식 반영 필요

- 복지정책의 수립과정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의식이 확인되어야 함
 -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는 국가차원(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정책설계와의 연동보다는 복지의식을 탐색하는 수준에 그침
 - 복지의식이 반영된다면 실제 도출되는 복지정책의 형태는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됨

□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전무함

- 충북도민의 복지의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부재로 충북의 복지에 대한 태도(가치)를 파악할 수 없음
 -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현대경제연구원, 2014)를 보면 복지서비스의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가장 나중에' 라는 이중성(NOOMP: Not out of my pocket)이 관찰됨
 -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복지' (31.7%) 보다 '중산층이 튼튼한 복지' (68.3%)에 대

한 선호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실제 도민의 복지의식 파악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복지의식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며 복지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복지의식의 이해

□ 복지의식은 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 및 가치관 또는 태도(양옥경, 2002)

- 복지 및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와 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태도와 의식을 의미하며 복지정책 수립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김상균, 정원오, 1995)
-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가치, 신념, 행동지향 등을 의미하며, 단일차원이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체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님(최균, 류진석, 2000)
- 본 연구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닌 인식,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복지the 의식이라고 정의

□ 복지the 의식 구성요소

- 복지기능 정당성, 복지공급 책임성, 복지비용부담 수용성, 복지제도의 선호성, 복지재정 확충(류진석, 2004)
- 복지제공 필요성, 복지책임주체, 복지재정 확대, 복지세금 증가(조돈문, 2001)
-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와 근로의욕의 관계, 사회복지 책임주체,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된 인식(한국복지패널, 2010~2015)
- 계층인식, 정치적 이념, 복지기능 정당성(노동동기 저하, 상호부조, 복지수급권 등) 의식, 복지책임의식,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 복지비용부담에 대한 인식, 복지제도 설계 등(이준우 등, 2012)

3. 복지의식 영향 요인

□ 복지수혜자로서의 위치

- 계층구조상 자신의 지위에 따라 분배기제에 대한 지지여부가 결정(Peterson, 2001)
 - 자신의 복지수급 자격 및 경험여부, 주관적 계층, 고용상 지위, 실업자·장애인·노인·수급자 여부, 경제활동참여여부, 소득 등에 따라 복지의식의 차이가 있음
 - 저소득층이 복지정책에 지지적 태도를 보이며 고소득층이나 복지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빈곤이나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소극적 지지를 보임
- 성별의 경우 과거 가족내에서 무급의 돌봄노동 수행자였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주요한 참여자로 진입하게 되면서 경제적 독립이 보다 용이해짐
 - 여성들은 복지국가를 통해 직접적인 수혜자로서의 이해와 복지공급자로서의 이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됨(김희자, 2013)
- 연령은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서로 다른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음
 - 취약연령대는 수혜자로서의 이해가 중요하지만, 출산 이전의 성인기나 어린 아동이 없는 장년기는 복지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입장에 놓이게 됨으로써 연령에 따른 복지이해와 복지태도의 차이가 존재

□ 사회화 요인

- 사회화과정에 따라 복지국가 인식에 대해 서로 다른 규범과 가치를 가짐
 - 성별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복지의식이 더 높은 연구와 여성보다 남성의 복지의식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로 양분(안상훈, 2009; 최유석, 2011)
 -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면서 복지의식도 변화. 교육수준과 복지의식은 정적 관계가 있음(김사현, 홍경준, 2010; 안상훈, 2009)
 - 젊은 층일수록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결과(김희자, 2013)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김신영, 2010; 안상훈, 2009; Blekesaune & Quadagno, 2003)로 양분

□ 이데올로기 요인(신념, 가치)

- 통합적, 이타주의적, 평등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개인주의적, 이기적, 반평

등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보다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지지(김신영, 2008)

- 공동체주의에 근거하여 평등한 분배정의를 지향할수록 정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고, 시장에서의 노동을 통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를 지향할수록 비호의적인 복지의식(함철호, 이중섭, 2010)을 가지며 복지혜택이 경제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봄(Craig, Grainous, & Martinez, 2006)
- 정치적 성향은 진보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경제적 개인주의 가치관이 낮을수록 복지의식 점수가 높음(이아름, 2010)

□ 거시적 수준

- 지역사회의 영향(배진희, 이중섭, 2013; 장동호, 2011)은 충청이 가장 보수적이고, 영남의 보수성이 두드러지며 호남이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임
 - 또한 지역의 재정여건, 지방정치의 성숙도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에 따라 지역별 편차를 보이며, 도·농간에도 편차를 보임
- 복지레짐 및 국가특성(백정미 등, 2008; Arts & Gelissen, 2001)은 자유주의국가보다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더 복지국가에 대해 호의적

4. 복지의식 유형¹⁾

□ 복지의식 유형 분류 기준

-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개인선택의 자유, 경쟁 등을 특징으로 하며 사적 복지책임주의를 강조, 집합주의(collectivism)는 평등, 연대성에 기초하며 공적 복지책임 주장
- 복지실천 의지
 - 객관적인 실체라기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인 경향으로 개인의 주체적, 자발적 의지로서 복지태도와 실천적 행위를 매개하는 복지행동 성향을 의미
 -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부행위, 복지재정확충에 대한 동의, 복지재원부담 적극성,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수용의지를 실천의지로 볼 수 있음

1) 최균, 류진석(2000)

□ 복지의식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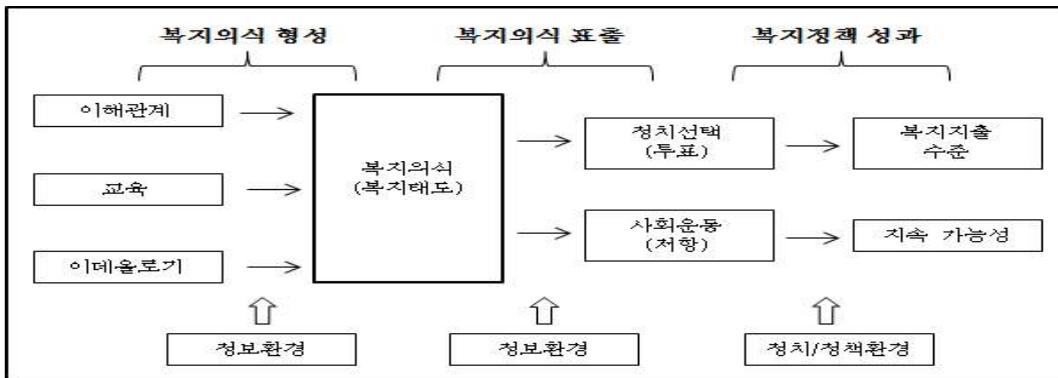
○ 국가주도 연대형, 민간주도 연대형,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민간의존 소극책임형



출처: 최균, 류진석(2000)

<그림1> 복지의식 유형

□ 복지의식 형성과 표출 과정



출처: 노대명, 전지현(2011)

<그림2> 복지의식의 형성과 표출의 메카니즘

5. 충북도민 복지의식 조사 분석

□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16.8.10.~8.23
- 조사대상 : 20세 이상 충북도민
- 조사대행기관 : 대전리서치센터의 전문조사요원을 통해 1:1 조사 실시

□ 사회인구학적 배경

<표1> 사회인구학적 배경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526	49.3	직업	사무직	152	14.2	
	남성	542	50.7		전문직	59	5.5	
	합계	1,068	100.0		서비스업	141	13.2	
연령	20대	160	15.0		자영업	114	10.7	
	30대	269	25.2		농림수산업	183	17.1	
	40대	269	25.2		공무원	91	8.5	
	50대	210	19.7		제조업	133	12.5	
	60대 이상	160	15.0		전업주부	111	10.4	
	합계	1,068	100.0		학생	51	4.8	
					무직	33	3.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26	11.8		합계	1,068	100.0	
	100만원-200만원 미만	157	14.7		지역	괴산	80	7.5
	200만원-300만원 미만	318	29.8			단양	80	7.5
	300만원-400만원 미만	292	27.3	보은		80	7.5	
	400만원-500만원 미만	133	12.5	영동		80	7.5	
	500만원 이상	42	3.9	옥천		80	7.5	
	합계	1,068	100.0	음성		80	7.5	
			계천	108		10.1		
학력	중졸이하	116	10.9	증평		81	7.6	
	고졸	557	52.2	진천		80	7.5	
	대졸	375	35.1	청주		210	19.7	
	대학원졸	20	1.9	충주		109	10.2	
	합계	1,068	100.0	합계		1,068	100.0	

□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

- 본인의 노후 불안정도(점수가 낮을수록 매우 불안) : 2.487점. 불안하다고 인식
- 본인의 정치성향(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 : 2.822점으로 보수적인 성향 보임
- 성장과 배분의 중요도(점수가 낮을수록 성장이 중요) : 성장이 다소 우세함
- 개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보장 정도(점수가 낮을수록 소득보장이 안됨) : 2.675점으로 아니라는 의견이 강함

<표2>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본인의 노후에 대한 생각	본인의 정치성향	성장과 분배 중 중요한 것	개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 보장 여부
전체		2.487	2.822	2.909	2.675
성별	여성	2.517	2.831	2.920	2.700
	남성	2.458	2.814	2.899	2.651
연령	20대	2.656	3.425	3.375	2.500
	30대	2.569	3.149	3.141	2.669
	40대	2.558	2.807	2.888	2.770
	50대	2.367	2.514	2.638	2.686
	60대 이상	2.219	2.100	2.444	2.688
지역	군	2.485	2.822	2.933	2.676
	시	2.489	2.822	2.874	2.674
학력	중졸이하	2.112	2.181	2.405	2.629
	고졸	2.409	2.831	2.986	2.636
	대졸이상	2.706	2.997	2.949	2.744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976	2.325	2.770	2.437
	100만원-200만원 미만	2.217	2.599	2.752	2.459
	200만원-300만원 미만	2.374	2.925	2.943	2.610
	300만원-400만원 미만	2.743	2.990	2.993	2.842
	400만원 이상	2.874	2.914	2.949	2.880

□ 사회복지 실시 목적

- 최소기본권 보장,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우선적 목적
- 중졸이하와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가장 많이 선택

<표3> 사회복지 실시 목적

(단위 : 명, %)

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	빈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회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기본권 보장	합계	
전체	150(14.0)	144(13.5)	185(17.3)	143(13.4)	130(12.2)	316(29.6)	1,068	
성별	여성	83(15.8)	70(13.3)	90(17.1)	69(13.1)	67(12.7)	147(27.9)	526
	남성	67(12.4)	74(13.7)	95(17.5)	74(13.7)	63(11.6)	169(31.2)	542
연령	20대	16(10.0)	22(13.8)	23(14.4)	28(17.5)	24(15.0)	47(29.4)	160
	30대	26(9.7)	35(13.0)	51(19.0)	38(14.1)	39(14.5)	80(29.7)	269
	40대	28(10.4)	38(14.1)	50(18.6)	38(14.1)	28(10.4)	87(32.3)	269
	50대	29(13.8)	25(11.9)	36(17.1)	27(12.9)	28(13.3)	65(31.0)	210
	60대 이상	51(31.9)	24(15.0)	25(15.6)	12(7.5)	11(6.9)	37(23.1)	160
지역	군	81(12.6)	85(13.3)	122(19.0)	82(12.8)	75(11.7)	196(30.6)	641
	시	69(16.2)	59(13.8)	63(14.8)	61(14.3)	55(12.9)	120(28.1)	427
학력	중졸이하	35(30.2)	13(11.2)	21(18.1)	10(8.6)	6(5.2)	31(26.7)	116
	고졸	76(13.6)	81(14.5)	99(17.8)	95(17.1)	56(10.1)	150(26.9)	557
	대졸이상	39(9.9)	50(12.7)	65(16.5)	38(9.6)	68(17.2)	135(34.2)	39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9(31.0)	18(14.3)	14(11.1)	10(7.9)	11(8.7)	34(27.0)	126
	100만원-200만원 미만	29(18.5)	27(17.2)	22(14.0)	17(10.8)	18(11.5)	44(28.0)	157
	200만원-300만원 미만	31(9.7)	47(14.8)	55(17.3)	41(12.9)	43(13.5)	101(31.8)	318
	300만원-400만원 미만	26(8.9)	31(10.6)	65(22.3)	45(15.4)	39(13.4)	86(29.5)	292
	400만원 이상	25(14.3)	21(12.0)	29(16.6)	30(17.1)	19(10.9)	51(29.1)	175

□ **내게 필요한 복지** : 교육비 397명(25.8%) > 의료비 352명(22.9%) > 주거비 310명(20.2%). 필요 없다 112명(7.3%). * 다중응답

□ **사회에 필요한 복지** : 생계비 816명(26.6%) > 의료비 757명(24.7%) > 주거비 607명(19.8%) * 다중응답

□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주체** : 중앙정부 451명(42.2%) > 지방정부 255명(23.9%)

<표4> 복지 일차적인 책임주체

구분	자기 자신	가족과 친척	이웃주민	지방정부	중앙정부	합계	
전체	241(22.6)	110(10.3)	11(1.0)	255(23.9)	451(42.2)	1,068	
성별	여성	102(19.4)	58(11.0)	6(1.1)	138(26.2)	222(42.2)	526
	남성	139(25.6)	52(9.6)	5(0.9)	117(21.6)	229(42.3)	542
연령	20대	41(25.6)	15(9.4)	1(0.6)	40(25.0)	63(39.4)	160
	30대	53(19.7)	26(9.7)	1(0.4)	68(25.3)	121(45.0)	269
	40대	54(20.1)	23(8.6)	4(1.5)	65(24.2)	123(45.7)	269
	50대	52(24.8)	24(11.4)	5(2.4)	49(23.3)	80(38.1)	210
	60대 이상	41(25.6)	22(13.8)	0(0.0)	33(20.6)	64(40.0)	160
지역	군	149(23.2)	70(10.9)	7(1.1)	162(25.3)	253(39.5)	641
	시	92(21.5)	40(9.4)	4(0.9)	93(21.8)	198(46.4)	427
학력	중졸이하	33(28.4)	19(16.4)	2(1.7)	19(16.4)	43(37.1)	116
	고졸	116(20.8)	43(7.7)	8(1.4)	146(26.2)	244(43.8)	557
	대졸이상	92(23.3)	48(12.2)	1(0.3)	90(22.8)	164(41.5)	39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29(23.0)	16(12.7)	2(1.6)	26(20.6)	53(42.1)	126
	100만원-200만원 미만	41(26.1)	27(17.2)	1(0.6)	36(22.9)	52(33.1)	157
	200만원-300만원 미만	75(23.6)	33(10.4)	2(0.6)	79(24.8)	129(40.6)	318
	300만원-400만원 미만	60(20.5)	21(7.2)	4(1.4)	70(24.0)	137(46.9)	292
	400만원 이상	36(20.6)	13(7.4)	2(1.1)	44(25.1)	80(45.7)	175

□ 복지제도 선호도

○ 선별적 복지 51.6% > 보편적 복지 16.1%

<표5> 복지제도 선호도

(단위 : 명, %)

구분	선별적 복지 최우선	선별적 복지 우선	중립	보편적 복지 우선	보편적 복지 최우선	합계	평균	
전체	51(4.8)	500(46.8)	345(32.3)	129(12.1)	43(4.0)	1068	2.638	
성별	여성	26(4.9)	235(44.7)	176(33.5)	64(12.2)	25(4.8)	526	2.671
	남성	25(4.6)	265(48.9)	169(31.2)	65(12.0)	18(3.3)	542	2.605
연령	20대	7(4.4)	62(38.8)	50(31.3)	31(19.4)	10(6.3)	160	2.844
	30대	9(3.3)	115(42.8)	103(38.3)	32(11.9)	10(3.7)	269	2.699
	40대	12(4.5)	125(46.5)	87(32.3)	33(12.3)	12(4.5)	269	2.658
	50대	12(5.7)	106(50.5)	65(31.0)	19(9.0)	8(3.8)	210	2.548
	60대 이상	11(6.9)	92(57.5)	40(25.0)	14(8.8)	3(1.9)	160	2.413
지역	군	37(5.8)	288(44.9)	209(32.6)	76(11.9)	31(4.8)	641	2.651
	시	14(3.3)	212(49.6)	136(31.9)	53(12.4)	12(2.8)	427	2.618
학력	중졸이하	6(5.2)	74(63.8)	23(19.8)	9(7.8)	4(3.4)	116	2.405
	고졸	31(5.6)	225(40.4)	195(35.0)	83(14.9)	23(4.1)	557	2.716
	대졸이상	14(3.5)	201(50.9)	127(32.2)	37(9.4)	16(4.1)	395	2.600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16(12.7)	75(59.5)	26(20.6)	5(4.0)	4(3.2)	126	2.254
	100만원- 200만원 미만	10(6.4)	77(49.0)	50(31.8)	14(8.9)	6(3.8)	157	2.548
	200만원- 300만원 미만	13(4.1)	154(48.4)	97(30.5)	37(11.6)	17(5.3)	318	2.657
	300만원- 400만원 미만	6(2.1)	115(39.4)	115(39.4)	52(17.8)	4(1.4)	292	2.771
	400만원 이상	6(3.4)	79(45.1)	57(32.6)	21(12.0)	12(6.9)	175	2.737
정치 성향	보수	32(7.3)	266(60.5)	86(19.5)	41(9.3)	15(3.4)	440	2.411
	중립	11(3.0)	121(33.1)	205(56.0)	24(6.6)	5(1.4)	366	2.702
	진보	8(3.1)	113(43.1)	54(20.6)	64(24.4)	23(8.8)	262	2.638

□ 복지지출 관련 의식수준

- 복지분야 지출 확대 희망 : 그렇다 44.3% > 보통 41.5%. 3.385점(보통 3점)으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함
-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 보통 44.5% > 그렇다 24.3%. 2.937점으로 보통 수준
- 복지지출 확대와 증세 동의를 찬성하는 비율 간에는 21.8%p 격차가 존재함

<표6> 복지지출 및 증세 의식수준

(단위 : 명, %, 점)

구분	빈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복지분야 지출 확대 수준	1,068	3(3)	118(11.0)	443(41.5)	473(44.3)	31(2.9)	3.385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수준	1,068	28(2.6)	294(27.5)	475(44.5)	259(24.3)	12(1.1)	2.937

○ 집단별 복지지출 관련 의식수준

- 성별 : 남성 > 여성, 연령 : 20대, 학력 : 학력이 높을수록
- 소득수준별 : 100만원 미만에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음. 증세 동의수준은 4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음
- 정치성향 : 진보층, 보편적 복지 선호층의 복지지출 확대와 증세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음

<표7> 복지지출 관련 의식수준

(단위 : 점)

구분		복지분야 지출확대 수준(A)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수준(B)	차이(A-B)
성별	여성	3.344	2.907	0.437
	남성	3.424	2.967	0.457
연령	20대	3.513	3.131	0.382
	30대	3.457	3.011	0.446
	40대	3.368	2.933	0.435
	50대	3.329	2.862	0.467
	60대 이상	3.238	2.725	0.513
지역	군	3.374	2.950	0.424
	시	3.400	2.918	0.482
학력	중졸이하	3.241	2.724	0.517
	고졸	3.377	2.887	0.490
	대졸이상	3.438	3.071	0.367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476	2.802	0.674
	100만원-200만원 미만	3.376	2.790	0.586
	200만원-300만원 미만	3.340	2.830	0.51
	300만원-400만원 미만	3.390	3.051	0.339
	400만원 이상	3.400	3.171	0.229
정치 성향	보수	3.191	2.716	0.475
	중립	3.462	3.082	0.380
	진보	3.603	3.107	0.496
선별과 보편	선별	3.394	2.858	0.536
	중립	3.310	3.020	0.290
	보편	3.506	3.023	0.483

□ 복지분야 재원마련 선호 방식

○ 부자 및 대기업 증세 361명(33.8%) > 세출구조 조정 237명(22.2%)

<표8> 복지분야 재원마련 선호 방식

(단위 : 명, %)

구분		국채 및 지방채 발행	사회보험료 인상	부자 및 대기업 증세	모두에 보편적 증세	세출구조 조정	본인부담금 강화	합계
전체		59(5.5)	163(15.3)	361(3.8)	163(15.3)	237(22.2)	85(8.0)	1068
성별	여성	36(6.8)	77(14.6)	184(35.0)	71(13.5)	118(22.4)	40(7.6)	526
	남성	23(4.2)	86(15.9)	177(32.7)	92(17.0)	119(22.0)	45(8.3)	542
연령	20대	7(4.4)	24(15.0)	69(43.1)	23(14.4)	30(18.8)	7(4.4)	160
	30대	17(6.3)	40(14.9)	89(33.1)	49(18.2)	60(22.3)	14(5.2)	269
	40대	18(6.7)	41(15.2)	86(32.0)	40(14.9)	62(23.0)	22(8.2)	269
	50대	13(6.2)	36(17.1)	63(30.0)	32(15.2)	45(21.4)	21(10.0)	210
	60대 이상	4(2.5)	22(13.8)	54(33.8)	19(11.9)	40(25.0)	21(13.1)	160
지역	군	37(5.8)	96(15.0)	226(35.3)	91(14.2)	139(21.7)	52(8.1)	641
	시	22(5.2)	67(15.7)	135(31.6)	72(16.9)	98(23.0)	33(7.7)	427
학력	중졸이하	4(3.4)	13(11.2)	34(29.3)	16(13.8)	27(23.3)	22(19.0)	116
	고졸	36(6.5)	73(13.1)	218(39.1)	70(12.6)	119(21.4)	41(7.4)	557
	대졸이상	19(4.8)	77(19.5)	109(27.6)	77(19.5)	91(23.0)	22(5.6)	395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7(5.6)	14(11.1)	48(38.1)	15(11.9)	30(23.8)	12(9.5)	126
	100만원-200만원 미만	3(1.9)	13(8.3)	64(40.8)	19(12.1)	44(28.0)	14(8.9)	157
	200만원-300만원 미만	17(5.3)	50(15.7)	110(34.6)	44(13.8)	72(22.6)	25(7.9)	318
	300만원-400만원 미만	27(9.2)	53(18.2)	89(30.5)	47(16.1)	56(19.2)	20(6.8)	292
	400만원 이상	5(2.9)	33(18.9)	50(28.6)	38(21.7)	35(20.0)	14(8.0)	175
정치 성향	보수	25(5.7)	71(16.1)	127(28.9)	57(13.0)	112(25.5)	48(10.9)	440
	중립	21(5.7)	62(16.9)	114(31.1)	65(17.8)	80(21.9)	24(6.6)	366
	진보	13(5.0)	30(11.5)	120(45.8)	41(15.6)	45(17.2)	13(5.0)	262
선별과 보편	선별	22(4.0)	107(19.4)	165(29.9)	83(15.1)	127(23.0)	47(8.5)	551
	중립	30(8.7)	46(13.3)	100(29.0)	53(15.4)	88(25.5)	28(8.1)	345
	보편	7(4.1)	10(5.8)	96(55.8)	27(15.7)	22(12.8)	10(5.8)	172

□ 복지정책 추진주체 신뢰도

○ 기초자치단체 3.34점(보통 3점) > 시민단체 3.28점

<표9> 복지정책 추진주체 신뢰도

(단위 : 명, %)

구분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
전체		3.173	3.215	3.340	3.280
성별	여성	3.194	3.222	3.346	3.255
	남성	3.153	3.208	3.334	3.304
시군	20대	2.900	2.975	3.219	3.419
	30대	3.045	3.100	3.238	3.279
	40대	3.056	3.130	3.275	3.245
	50대	3.329	3.381	3.457	3.281
	60대 이상	3.656	3.575	3.588	3.200
지역	군	3.073	3.131	3.307	3.275
	시	3.323	3.342	3.389	3.288
학력	중졸이하	3.534	3.526	3.517	3.181
	고졸	3.172	3.206	3.329	3.323
	대졸이상	3.068	3.137	3.304	3.248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587	3.516	3.587	3.238
	100만원-200만원 미만	3.102	3.121	3.255	3.204
	200만원-300만원 미만	3.063	3.094	3.261	3.135
	300만원-400만원 미만	3.164	3.212	3.346	3.421
	400만원 이상	3.154	3.309	3.371	3.406
정치 성향	보수	3.480	3.459	3.495	3.180
	중립	3.150	3.180	3.369	3.347
	진보	2.691	2.855	3.038	3.355
선별과 보편	선별	3.281	3.299	3.396	3.189
	중립	3.177	3.220	3.368	3.342
	보편	2.820	2.936	3.105	3.448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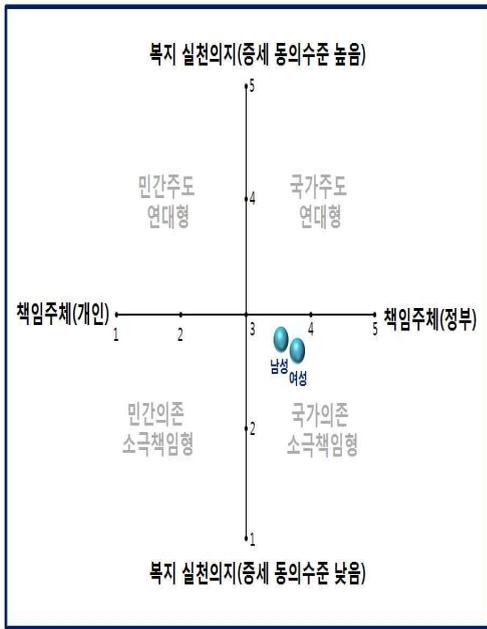
□ 복지의식 유형 :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 복지의식 유형은 복지책임주체와 개인의 실천의지를 통해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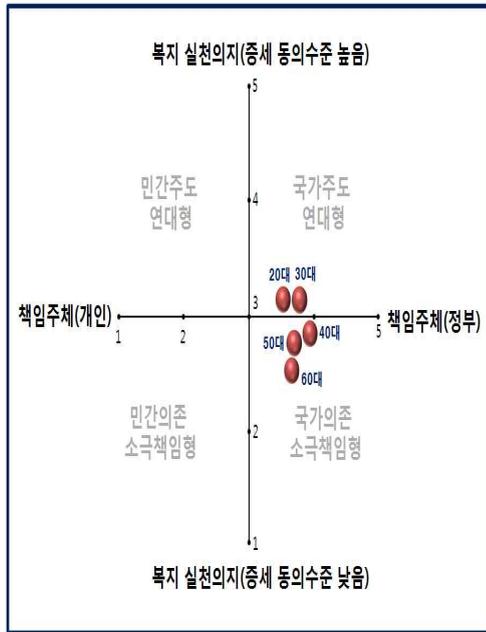
- 충북도민은 복지책임주체를 정부(지방정부)로 강하게 인식(3.529점)하고 있으며, 개인 실천 의지인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수준은 2.937점으로 나타남
- 이를 유형화 하면 충북도민의 복지유형은 국가의존 소극책임형으로 분류 가능

<표10> 충북도민 복지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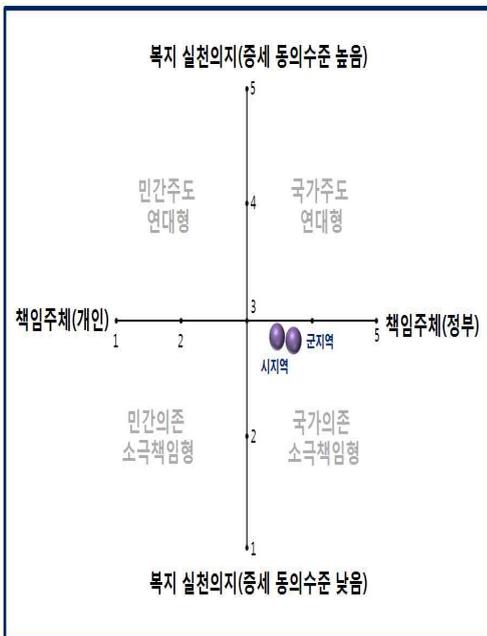
구분		복지 일차적 책임주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수준	복지의식 유형
충북 전체		3.529	2.937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성별	여성	3.608	2.907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남성	3.452	2.967	
연령	20대	3.431	3.131	국가주도 연대형
	30대	3.662	3.011	
	40대	3.669	2.933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50대	3.386	2.862	
	60대 이상	3.356	2.725	
지역	군	3.388	2.950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시	3.625	2.918	
학력	중졸이하	3.172	2.724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고졸	3.645	2.887	국가주도 연대형
	대졸이상	3.471	3.071	
소득 수준	100만원 미만	3.460	2.802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100만원-200만원 미만	3.197	2.790	
	200만원-300만원 미만	3.484	2.830	
	300만원-400만원 미만	3.695	3.051	국가주도 연대형
	400만원 이상	3.680	3.171	
정치 성향	보수	3.368	2.716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중립	3.702	3.082	국가주도 연대형
	진보	3.557	3.107	
선별과 보편	선별	3.407	2.858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중립	3.696	3.020	국가주도 연대형
	보편	3.587	3.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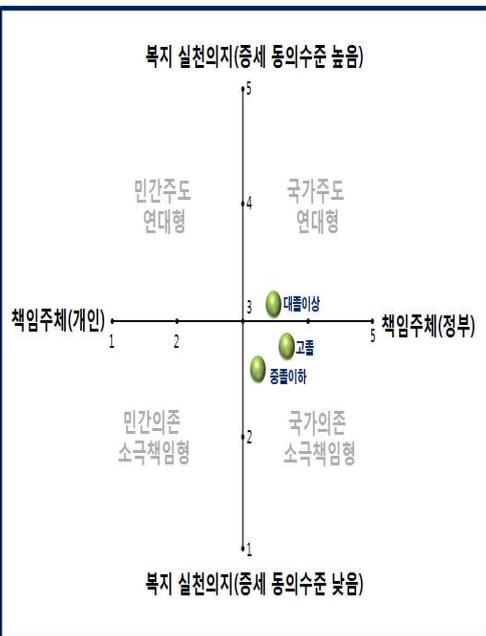
<그림3> 성별 복지의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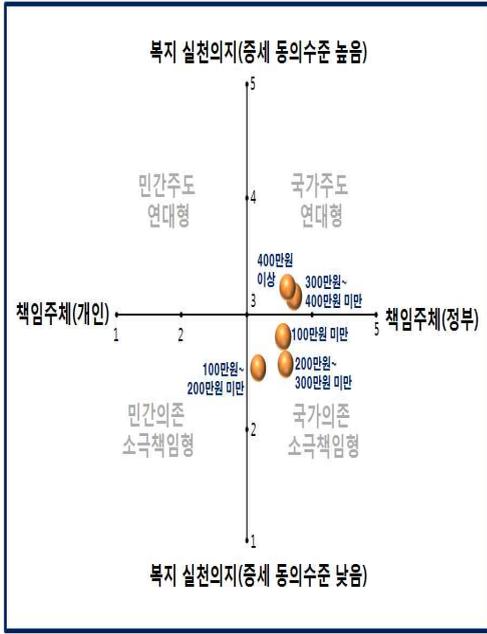
<그림4> 연령대별 복지의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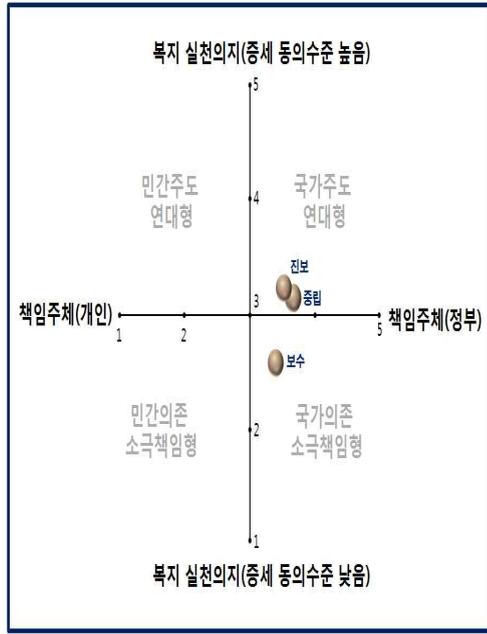
<그림5> 지역별 복지의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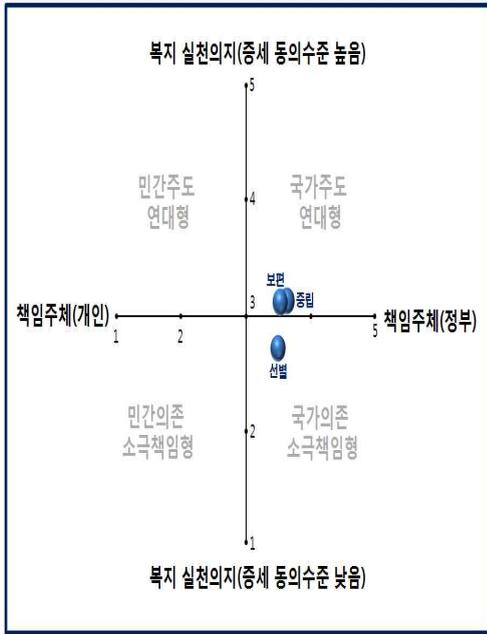
<그림6> 학력별 복지의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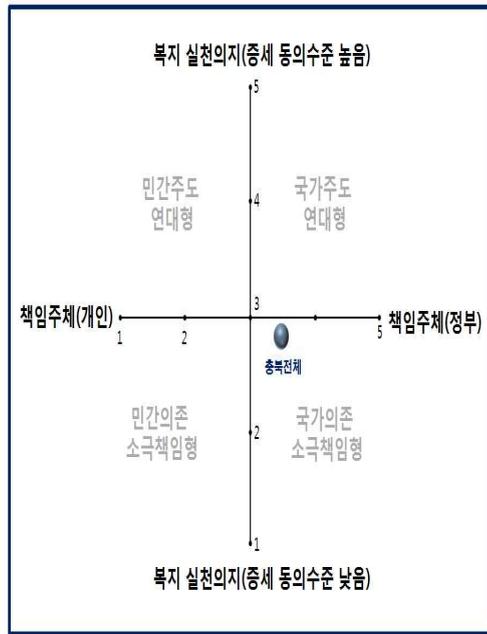
<그림7> 소득수준별 복지의식 유형



<그림8> 정치성향별 복지의식 유형



<그림9> 복지선호도별 복지의식 유형



<그림10> 충북도민 복지의식 유형

- 현재 충북의 복지의식 유형은 국가의존 소극책임형이나 20~30대, 대졸이상, 400만원 이상(고소득집단), 정치성향 중립집단, 그리고 복지선호방식 중립집단이 국가주도 연대형을 띄고 있어 충북도민의 복지의식 변화가능성을 내포함
- 따라서 현재의 복지정책 구조가 취약계층중심의 선별적인 방식이라면 미래세대의 복지는 국가주도 연대형의 보편적인 복지로 변화해야 할 것임

□ 복지이식과 실천 간의 불일치

- 복지지출 확대 찬성수준은 47.2%, 평균 3.385점이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동의 수준은 25.4%, 평균 2.937점으로 의식과 실천 간에 괴리가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증세에 대한 동의수준만을 질문하였으나 실제 세금납부의사를 질문하였을 경우 세금납부 동의수준과는 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복지재원부담에 대해 부자와 대기업 증세 33.8%, 세출구조 조정 22.2%로 재원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응답에 근거함
- 즉 복지확대를 바라지만 도민 자신의 직접 기여가 아닌 3자를 통해 사회복지가 실천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복지이식과 실천 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함

□ 복지관련 지출 우선순위는 교육 및 보육·육아분야

- 충북도민이 복지관련 예산지출을 더 희망하는 분야는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다르나 전반적으로 교육복지와 보육/육아정책 분야임. 특히 40대 이하에서 교육 및 보육정책 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 충북의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고려한다면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함. 충북의 미래를 담당할 세대를 위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교육비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제도적 복지개념 보안을 위한 지역단위의 공동체적 복지 추구

- 로메니신(Romanyszyn)은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할수록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개인의 자선에 의존하기보다 공공개입을 통한 적정수준의

보장으로 관점이 변화한다고 지적함

- 충북도민은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주체를 (지방)정부라고 65.9%가 인식하였으며 개인과 가족으로 보는 견해(32.9%)도 적지 않아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공존함
- 따라서 앞으로 충북의 복지체계는 공공의 복지책임을 확대해 가는 동시에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보완측면으로 개인차원의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체적 복지체계를 강화해야할 것임

□ 복지패러다임 변화 모색

- 충북도민은 정치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보수적인 성향(2.822점)으로 성장과 분배 중 중립에 가까운 성장(2.909점)을 지향하며, 선별적 복지를 선호(2.638점)함
- 특히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집단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선호하여 계층 간, 세대 간의 복지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음
- 현재 무상보육, 무상급식으로 복지부담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OECD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는 저부담, 저복지 수준임. 또한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복지제도는 대부분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는 지역맞춤형사업을 전개하기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가와 지방간 복지사무에 대한 조정, 재정지원방식의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 및 복지의식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임

교통복지정책 진단 및 방향

2017.02.10

충북연구원 총괄분원장
수석연구위원
원광희

CONTENTS

1. 교통복지란?
2. 교통약자 이동증진수단 현황
3. 교통약자 관련법 및 정책
4. 교통복지 예산
5. 충북 교통복지 이슈
6. 충북 교통복지 정책방향

1. 교통복지란?

▣ 교통복지의 배경

-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교통부문까지 확장되었으며, 고령시대의 도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교통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정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정책에 대한 투자를 인색하게 만들고 있음
-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들면서 축소도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는 이동권의 보장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교통부문이 복지라는 거대담론 속에 포함됨으로써 복지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

3

▣ 교통복지의 개념

- 교통복지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교통 활동에 관한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
 - 모든 국민이 사회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차이로 인해 차별이 존재하는지가 교통복지 구현의 판단 근거가 되며, 이는 교통복지에 대한 교통약자의 중점적 보호측면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정의

- 교통약자에 대한 과거 연구들은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신체적 혹은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은 점차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물리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

4

▣ 교통약자의 정의

○ 교통약자

-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
- 교통약자는 이동제약의 형태에 따라 항시적 교통약자(신체 장애인, 고령자 등)와 일시적 교통약자(부상자, 임산부 등)로 구분

〈표〉 교통약자 구분기준

구분	내용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로 구성
장애인	장애 유형별(지체, 자폐 등 16개 분류) · 등급별(1~6급) 구분
고령자	65세 이상 인구 수
임산부	해당연도 이듬해 출생아 인구 또는 이듬해 “0세” 인구로 추정
어린이	5~9세 인구 수
영유아를 동반한 자	0~4세(영유아) 인구로 추정

-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부녀자, 학생 등 교통약자로 제한

5

2. 교통약자 이동증진수단 현황

▣ 저상버스

-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19.9%, **충북은 20.4%**

- 2016년까지 보급률을 40%이상 확대할 계획이지만 많은 지자체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현황(2015년 말 기준)

구분	시내버스(대)	저상버스(대)	도입률(%)
서울특별시	7,482	2,653	35.5
부산광역시	2,511	464	18.5
대구광역시	1,521	360	23.7
인천광역시	2,285	318	13.9
광주광역시	998	166	16.6
대전광역시	965	214	22.2
울산광역시	741	100	13.5
세종특별자치시	126	41	32.5
경기도	10,522	1,376	13.1
강원도	569	184	32.3
충청북도	578	118	20.4
충청남도	944	54	5.7
전라북도	828	139	16.8
전라남도	697	66	9.5
경상북도	1,182	112	9.5
경상남도	1,640	367	22.4
제주도	187	5	2.7
합계	33,776	6,737	19.9

자료 :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2016)

6

▣ 저상버스

○ 충북 저상버스 도입현황

- 청주시 104대, 충주시 8대, 제천시 6대로 시지역에만 도입되었음
- 충주시와 제천시는 CNG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도입
(국토교통부, 2016)

〈표〉 충북 저상버스 도입현황

(단위: 대, 개, 개소)

지자체명	저상버스 도입대수	저상버스 운행노선수	노선당 저상버스 운행대수	CNG 충전소 설치현황
청주시	104	13	8.0	3
충주시	8	6	1.3	-
제천시	6	9	0.7	-
계	118	28	4.2	3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5)

7

▣ 저상버스

○ 충북 저상버스 도입현황

- 저상버스의 구성비는 충주시가 10.8%로 청주시 1.6%, 제천시 7.4% 보다 높음

〈표〉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운영 현황

(단위: 대, %)

시군	2012			2013			2014			2015			2016. 6.		
	시내 버스	저상버스	구성비												
합계	721 (187)	24	3.3	742 (195)	20	2.7	744 (205)	21	2.8	762 (215)	25	3.3	764 (216)	20	2.6
청주시	402 (28)	11	2.7	420 (32)	7	1.7	420 (32)	8	1.9	436 (45)	12	2.8	436 (45)	7	1.6
충주시	72 (37)	8	11.1	74 (40)	8	10.8	74 (46)	8	10.8	74 (50)	8	10.8	74 (51)	8	10.8
제천시	68 (31)	5	7.4	68 (31)	5	7.4	68 (33)	5	7.4	68 (32)	5	7.4	68 (32)	5	7.4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주: 1) 시내버스 대수: 일반버스 + 저상버스 + 좌석버스 대수 2) ()는 공영버스 대수

8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전국 평균 95.4%
 - 저상버스에 비하여 운영비가 높고, 지역마다 상이한 이용요금과 콜번호 체계, 운행지역의 제한, 대기시간과 이용가능시간의 비실효성 등의 문제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2016년까지 법정 대수(제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100% 도입을 목표로 설정
 - 2015년 말 기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2,601대로 법정대수(2,726대) 대비 95.4% 도입
 - **충북의 도입률은 85.6%로 전국 95.4% 보다 낮은 수준**

9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전국 평균 95.4%, **충북은 85.6%**

〈표〉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구분	법정대수	도입대수	도입률(%)
전국	2,726	2,601	95.4
서울	432	424	98.1
부산	185	198	107.0
대구	128	123	96.1
인천	139	140	100.7
광주	76	92	121.1
대전	78	57	73.1
울산	49	41	83.7
세종	10	8	80.0
경기	547	566	103.5
강원	102	93	91.2
충북	125	107	85.6
충남	132	84	63.6
전북	168	110	65.5
전남	144	79	54.9
경북	183	124	67.8
경남	190	315	165.8
제주	38	40	105.3

자료 :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2016)

10

▣ 특별교통수단

○ 충북의 특별교통수단

- 법정대수 125대 대비 운행대수는 107대로 도입률은 85.6%
- 옥천군 도입률이 180.0%로 가장 높으며, 진천군은 15.8%로 가장 낮음

〈표〉 충북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구분	장애인 1·2급(명)	법정대수(대)	운행대수(대)	도입률(%)
충북	25,286	125	107	85.6
청주시	8,439	42	47	111.9
충주시	2,843	14	18	128.6
제천시	2,067	10	13	130.0
보은군	3,167	16	3	18.8
옥천군	1,062	5	9	180.0
영동군	829	4	2	50.0
증평군	448	2	2	100.0
진천군	3,897	19	3	15.8
괴산군	706	4	3	75.0
음성군	1,268	6	4	66.7
단양군	560	3	3	100.0

자료 : 201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2016)

11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대부분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지만 충주시의 경우 공업사에서 위탁운영

〈표〉 충북 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현황

구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여부 (○, X)	운영주체	운영방식	위탁기관
청주시	○	청주시	위탁운영	청주시설관리공단
충주시	○	충주시	위탁운영	대교공사
제천시	○	제천시	위탁운영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천시지회
보은군	○	보은군	위탁운영	지체장애인보은군지회
옥천군	○	옥천군	위탁운영	(사)지체장애인협회옥천군지회
영동군	○	영동군	위탁운영	영동군장애인심부름센터
증평군	○	증평군	위탁운영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증평군지회
진천군	○	진천군	위탁운영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
괴산군	○	괴산군	위탁운영	괴산군장애인연합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괴산지회
음성군	○	음성군	민간운영	음성군장애인복지관
단양군	○	단양군	위탁운영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주 : 특별교통수단은 시내버스(대중교통)와 별개로 운영되는 차량임

12

3. 교통약자 관련법 및 정책

▣ 교통복지 관련법

- 1981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이동권 개념을 확대하여, 1997년 특별법 성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2005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을 제정
 -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게 생활상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부문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규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제정은 교통약자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통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
-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자의 “보행자길”과 “보행환경”을 정의하여,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고자 마련

13

▣ 교통복지정책

▣ 재정지원 교통복지정책

- 환승할인 등으로 인한 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버스·도시철도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 버스는 적자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이 있으며, 도시철도는 적자보전의 형태로 지원
 -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의 경우 100% 지자체 부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의 제정은 교통약자 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통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

〈표〉 재정지원 교통복지정책

	교통복지정책	정책 대상	관련 법령
대중교통지원	환승할인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업체 적자보전	버스, 도시철도 운송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특정계층지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으로 인한 손실 보상	철도 공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특정지역지원	국토균형발전, 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	철도 공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유가보조금지원	화물운반비용을 줄이기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료: 안근원·김지인(2013)

14

▣ 재정지원 교통복지정책

○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의 요금감면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은 철도운영주체가 지원대상
- 교통요금감면제도 : 취약계층이 지하철, 철도, 국내선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제도
- 철도 운임감면 보상 : 교통 취약계층에게 요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철도공사의 손실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 특정지역 지원

- 벽지노선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특정지역 지원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
- 손실이 발생하는 철도 등의 운영주체가 정책지원 대상
- 버스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특수목적사업보상을 통해 지원하며, 철도의 경우 경북선 등 8개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액을 보상

15

▣ 재정지원 교통복지정책

○ 유류보조금

- 화물운반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경유·휘발유에 부과·징수하는 주행세(지방세, 보통세)를 재원으로 함. 특히,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경유·LPG를 사용하는 노선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으로 분류

16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전략별 추진과제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보행환경 개선, R&D 등 기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방안을 추진
- 교통수단, 여객시설, 대기시설 등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세부내용

〈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이동편의 시설	개선 사항
교통수단	자동안내방송 및 전자문자안내판 등 개선, 노후차량교체 등 개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 및 좌석 지정, 장애인접근가능표시
여객시설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개선,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개선·확충 장애인 화장실 설치 개선, 안내시설 설치 및 개선
대기시설	버스정류장 턱낮추기 및 보도폭 확보, 점자블록 설치, 버스정보 안내시설 설치

자료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해양부(2012) 재구성

17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 저상버스의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교통약자 수, 도입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목표치를 차등화하여 실효성을 제고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서울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8개도 지역 30%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CNG 저장공간인 LNG 인수기지의 건설 이후 (2017년 완공 예정) 2018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예정
 - 마을버스 운행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대형버스 운영을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 중형 저상버스를 개발하여 전 지역 저상버스 보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이동편의 시설	개선 사항
저상버스 보급 확대	중형 저상버스 개발 및 보급으로 저상버스 보급 형평성 제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목표치 설정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특별교통서비스 수혜의 지역적·계층적 형평성 제고 16개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 제시

자료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해양부(2012) 재구성

18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 보행환경 개선

- 보도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보행우선구역 확대,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추진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는 유도 및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시는 경보 및 피난시설을 개선하고자 함. 그리고 보행우선구역사업은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여건, 시민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를 선정

19

▣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동편의시설의 설치 등)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로 구분함

- 교통수단 : 버스, 도시철도 및 철도, 항공기, 선박, 광역전철 등 기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 터미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도시철도 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 역사 등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
- 도로 : 도로, 준용도로 등

20

▣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표〉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대상시설	세부내용	
교통 수단	차량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승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비행기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선박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광역전철	광역전철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여객 시설	환승시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도시철도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철도역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공항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항만친수시설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광역전철역사	광역전철의 역사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 이 준용되는 도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재구성

21

4. 교통복지 예산

▣ 중앙정부 재정지원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 재원 일부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수단·보행환경 개선 투자비용으로 활용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를 목적으로 1993년에 제정
-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지원.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 40%, 그 외 지역은 50% 보조금 지원

〈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연차별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계
국고지원	420	673	881	1,150	1,441	4,565
지방자치단체	483	740	968	1,264	1,583	5,038
총액	903	1,412	1,849	2,414	3,024	9,602

자료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해양부(2012)

주 : 2012년은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한 비용

22

중양정부 재정지원

연구개발사업 및 법·제도, 설치관리지침 개정

〈표〉 연구개발사업 및 법·제도, 설치관리지침 개정 연구

구분	(단위: 억원)					
	총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마을버스·농어촌용 중형 저상버스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16.5	2.5	4.0	6.0	2.0	2.0
스마트폰용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연구개발사업	3.5	2.0	1.0	0.5	-	-
정성적평가의 계량화 방안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4.0	1.0	2.0	1.0	-	-
장애인 하이패스 개발연구	5.0	1.5	2.5	1.0	-	-
특별교통수단 적정 보급기준에 대한 연구	4.0	-	2.0	2.0	-	-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정에 대한 연구	15.0	2.0	6.0	6.0	1.0	-
총계	48.0	9.0	17.5	16.5	3.0	2.0

자료 :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해양부(2012)

23

충북도 재정지원

충북도 재정지원 현황

- 2016년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도비보조금」, 「시·군비 보조금」의 시·군별 합리적 배분으로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
- 시·군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여부

〈표〉 시내(농어촌)버스 세부 분야별 재정지원

구분	기준	비고
운송사업 재정지원	충북 내 모든 시·군 시행	※대폐차비 포함
벽지노선 손실보상	충북 내 모든 시·군 시행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단양군 2016년도 미지원
환승할인 보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시설장비 개선	청주시, 충주시	
유가보조금	증평군, 보은군 제외 9개 시·군 시행	
비수익(적자노선)	괴산군, 옥천군	
단일요금	청주시,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2017년부터 지원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청주시	
저상버스 도입 보조	청주시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24

□ 시군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충북 내 시·군별 재정지원 총 금액은 약 736억원이고 국비 11.6억원, 도비 7.6억원, 시·군비 647억원으로 시군비가 88.1%를 차지함
 - 청주시의 총 버스 재정지원액은 325억원, 충주시 168억원으로 도내 지원액의 67%를 차지함. 증평군은 1.6억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적음
 - 도비는 청주시가 26.5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음
 - 시·군비는 청주시 293.7억원, 충주시 158억원의 순으로 재정지원을 많이 받음

〈표〉 2016년 시·군별 재정지원 배분내역

구분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총괄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73,509,606	100.0	1,158,290	761,366	64,735,950
청주시	32,512,877	44.2	488,290	2,656,765	29,367,822
충주시	16,767,199	22.8	-	950,690	15,816,509
제천시	4,834,692	6.6	-	831,086	4,003,606
음성군	3,142,233	4.3	670,000	432,503	2,039,730
진천군	2,641,843	3.6	-	359,550	2,282,293
증평군	162,847	0.2	-	27,571	135,276
괴산군	3,265,255	4.4	-	612,550	2,652,705
보은군	2,102,872	2.9	-	396,252	1,706,620
옥천군	3,631,356	4.9	-	604,288	3,027,068
영동군	2,457,788	3.3	-	388,044	2,069,744
단양군	1,990,644	2.7	-	356,067	1,634,577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25

□ 사업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총 금액 736억원 중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금액은 137억원임
 - 유가보조금이 18.6%로 두 번째로 비중이 크며 금액은 136억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8.4%로 금액은 135억원, 시설장비 개선은 0.3%로 비중이 가장 작으며 금액은 3.4억원
 -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중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은 유가보조금 6.7억원과 저상버스 도입금 4.9억원 뿐임

〈표〉 2016년 사업별 재정지원 배분내역

구분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총괄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73,509,606	100.0	1,158,290	7,615,366	64,735,950
운송사업 재정지원	13,711,729	18.7	-	6,121,013	7,590,716
벽지노선 손실보상	13,554,931	18.4	-	612,062	12,942,869
오지도시 공영버스 구입지원	2,197,167	3.0	-	173,646	2,023,521
환승활인 보전	10,891,000	14.8	-	-	10,891,000
시설장비 개선	342,610	0.5	-	-	342,610
유가보조금	13,640,203	18.6	670,000	-	12,970,203
비수익 (적자노선)	915,000	1.2	-	324,500	590,500
단일요금	11,631,386	15.8	-	140,000	11,491,386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5,649,000	7.7	-	-	5,649,000
저상버스 도입	976,580	1.3	488,290	244,145	244,145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주: 재정지원은 대체지원을 포함함

26

▣ 세부 사업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 운송사업 재정지원의 총 금액은 137억원으로 도비 61억원과 시·군비 77억원으로 구성
- 청주시의 운송사업 재정지원액은 합계 47.4억원으로 총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의 34.5%를 차지
-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같은 금액을 배분받으나, 제천시, 증평군, 옥천군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남. 특히 진천군이 약 20 대 80 비율로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 차이를 보임

〈표〉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단위: 천원)

구분	운송사업 재정지원액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①	시·군비②	①:②
합계	13,711,729	100.0	-	6,121,013	7,590,716	44.6:55.4
청주시	4,735,096	34.5	-	2,367,548	2,367,548	50:50
충주시	1,540,634	11.2	-	770,317	770,317	50:50
제천시	1,333,086	9.7	-	691,543	641,543	51.9:48.1
음성군	734,050	5.4	-	367,025	367,025	50:50
진천군	1,600,000	11.7	-	310,882	1,289,118	19.4:80.6
증평군	44,552	0.3	-	22,276	22,276	50:50
괴산군	730,186	5.3	-	365,093	365,093	50:50
보은군	670,872	4.9	-	335,436	335,436	50:50
옥천군	1,081,963	7.9	-	270,248	811,715	25:75
영동군	637,788	4.7	-	318,894	318,894	50:50
단양군	603,502	4.4	-	301,751	301,751	50:50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27

▣ 세부 사업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총 금액은 135.5억원이며 도비 6.1억원, 시·군비 129.4억원으로 구성
- 충주시의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액은 29.5억원으로 총액의 21.4%를 차지하며 충북내 11개의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지원 받음
- 제천시는 260억 95만 5천원으로 19.2% 정도를 차지하며 두 번째 높음

〈표〉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단위: 천원)

구분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3,554,931	100.0	-	612,062	12,942,869	
청주시	16,131	0.1	-	16,131	-	
충주시	2,904,565	21.4	-	103,197	2,801,368	
제천시	2,600,955	19.2	-	100,955	2,500,000	
음성군	1,376,883	10.2	-	65,478	1,311,405	
진천군	644,000	4.8	-	48,668	595,332	
증평군	118,295	0.9	-	5,295	113,000	
괴산군	1,572,069	11.6	-	62,957	1,509,112	
보은군	1,200,000	8.9	-	60,816	1,139,184	
옥천군	1,107,393	8.2	-	44,393	1,063,000	
영동군	800,000	5.9	-	49,856	750,144	
단양군	1,214,640	9.0	-	54,316	1,160,324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28

▣ 세부 사업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을 받는 시·군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6개. 2016년도 단양군의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없음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의 총 금액은 약 22억원으로 도비 1.7억원과 시·군비 20.2억원으로 구성
- 2016년도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시행되는 5개의 시·군 중 충주시가 9.7억원으로 총 금액의 4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음. 옥천군은 1.1억원으로 총 금액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받음

〈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구분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단위: 천원)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197,167	100.0	-	173,646	2,023,521
청주시	336,579	15.3	-	28,941	307,638
충주시	972,000	44.2	-	77,176	894,824
제천시	558,588	25.4	-	38,588	520,000
음성군	-	-	-	-	-
진천군	-	-	-	-	-
증평군	-	-	-	-	-
괴산군	-	-	-	-	-
보은군	-	-	-	-	-
옥천군	110,000	5.0	-	9,647	100,353
영동군	220,000	10.0	-	19,294	200,706
단양군	-	2016년 미지원	-	-	-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29

▣ 세부 사업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유가보조금

- 유가보조금의 총 금액은 136.4억원으로 증평군과 보은군을 제외한 9개의 시·군에서 시행. 국비 6.7억원과 시·군비 129.7억원으로 구성
- 충주시의 유가보조금은 100.9억원으로 총 금액의 79.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음
- 유가보조금 국비 지원을 받는 시·군은 음성군밖에 없으며 금액은 6.7억원

〈표〉 유가보조금

구분	유가보조금 (단위: 천원)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3,640,203	100.0	670,000	-	12,970,203
청주시	351,795	2.6	-	-	351,795
충주시	10,900,000	79.9	-	-	10,900,000
제천시	342,063	2.5	-	-	342,063
음성군	670,000	4.9	670,000	-	-
진천군	397,843	2.9	-	-	397,843
증평군	-	0.0	-	-	-
괴산군	296,000	2.2	-	-	296,000
보은군	-	0.0	-	-	-
옥천군	240,000	1.8	-	-	240,000
영동군	270,000	2.0	-	-	270,000
단양군	172,502	1.3	-	-	172,502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30

▣ 세부 사업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비수익(적자노선)

- 비수익(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은 총 9억 1천5백만원으로 도비 3억 2천4백5십만원과 시·군비 5억 9천5십만원으로 구성된다.
- 비수익(적자노선) 재정지원을 받는 시·군은 괴산군, 옥천군뿐이다. 괴산군은 3억 6천9백만원으로 총 금액의 40.3%를 차지하고 옥천군은 5억 4천6백만원으로 총 금액의 5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비수익(적자노선)

(단위: 천원)

구분	비수익(적자노선)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915,000	100.0	-	324,500	590,500
청주시	-	-	-	-	-
충주시	-	-	-	-	-
제천시	-	-	-	-	-
음성군	-	-	-	-	-
진천군	-	-	-	-	-
증평군	-	-	-	-	-
괴산군	369,000	40.3	-	184,500	184,500
보은군	-	-	-	-	-
옥천군	546,000	59.7	-	140,000	406,000
영동군	-	폐지	-	-	-
단양군	-	-	-	-	-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31

▣ 세부 사업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단일요금

- 단일요금 지원의 총 금액은 116억원으로 도비 1.4억원, 시·군비 114.9억원으로 구성
- 충북내 청주시,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총 7개의 시·군에서 단일요금 지원이 시행. 단양군은 2017년부터 시행 예정
- 청주시의 단일요금 지원액은 96.6억원으로 충북의 83.1%를 차지

〈표〉 단일요금

(단위: 천원)

구분	단일요금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1,631,386	100.0	-	140,000	11,491,386
청주시	9,664,086	83.1	-	-	9,664,086
충주시	-	-	-	-	-
제천시	-	-	-	-	-
음성군	361,300	3.1	-	-	361,300
진천군	-	-	-	-	-
증평군	-	-	-	-	-
괴산군	298,000	2.6	-	-	298,000
보은군	232,000	2.0	-	-	232,000
옥천군	546,000	4.7	-	140,000	406,000
영동군	530,000	4.6	-	-	530,000
단양군	2017년부터 시행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32

▣ 세부 사업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 충북의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은 청주시만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56.5억원으로 총액이 모두 같음

〈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단위 : 천원)

구분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5,649,000	100.0	-	-	5,649,000
청주시	5,649,000	100.0	-	-	5,649,000
충주시	-	-	-	-	-
제천시	-	-	-	-	-
음성군	-	-	-	-	-
진천군	-	-	-	-	-
증평군	-	-	-	-	-
괴산군	-	-	-	-	-
보은군	-	-	-	-	-
옥천군	-	-	-	-	-
영동군	-	-	-	-	-
단양군	-	-	-	-	-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33

▣ 세부 사업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 충북 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에서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나 충북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청주시만 시행함. 따라서 9.8억원으로 총액이 모두 같음
- 청주시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국비 4.9억원과 도비 2.4억원원, 시·군비 2.4억원으로 구성

〈표〉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합계	구성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976,580	100.0	488,290	244,145	244,145
청주시	976,580	100.0	488,290	244,145	244,145
충주시	-	-	-	-	-
제천시	-	-	-	-	-
음성군	-	-	-	-	-
진천군	-	-	-	-	-
증평군	-	-	-	-	-
괴산군	-	-	-	-	-
보은군	-	-	-	-	-
옥천군	-	-	-	-	-
영동군	-	-	-	-	-
단양군	-	-	-	-	-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2016)

34

5. 충북 교통복지 이슈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확대

-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하고,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업체에 따라 서비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

▣ 저상버스 이용환경과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저상버스 공급 자체도 미흡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정류장 시설의 단차, 동선 확보 등의 시설물 점검으로 이용활성화를 꾀하는 것 필요. 즉 보행로나 교통수단에 대한 편의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교통시설

▣ 농촌지역의 교통수요에 따른 대체교통수단(DRT) 공급

- 고령화, 도시화에 따라 교통소외지역의 증가, 승용차 보유증가로 대중교통서비스 악화 경향
-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은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므로 대체 교통서비스 도입 필요

35

▣ 교통약자 보호시스템 지속적 확대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보이스 네비시스템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행로 안내서비스 제공 필요

▣ 교통을 복지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 교통복지는 개인 및 집단이 당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켜주고 교통접근성을 증가시킬 때 향상되는 것으로 충북의 경우 아직 교통과 복지를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
- 교통복지의 투자는 교통약자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킴으로 복지의 근간이 될 수 있음

▣ 기존 운송적자보전 방식의 새로운 접근방안 강구 필요

- 운송사업체의 적자보전형태의 간접지원이 효율적일지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연구 필요

36

6. 충북 교통복지 정책방향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질 향상 중심의 정책추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등의 교통복지정책은 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보행등 개선·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설공급과 확대에 치중된 교통복지정책은 교통약자의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
- 교통약자는 신체장애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설 확충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접근성 및 연계성 향상을 위한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등 질적 측면의 교통복지정책을 개발해야 함
-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위한 교통약자보호구역의 지속적 확충 필요
- 특별교통수단은 위탁기관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나, 현황에서와 같이 일부지자체에서는 공업사에서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발견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큰 기관위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7

▣ 지역여건을 반영한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재정부담 또는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40% 이상 확대할 계획이지만, 각 지자체들은 도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목표달성이 미진함
- 경기도는 자체계획 수립 시 도농복합지역 환경을 반영하여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2017년까지 34.0%로 하향 조정(당초 국토교통부는 2016년까지 40.0% 달성을 계획)
- 저상버스는 낮은 차체와 무거운 중량, 긴 차장, 자동변속기, CNG 연료사용 등으로 농어촌지역과 같은 좁은 도로여건과 적은 이용수요에 대응하여 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중형 저상버스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당초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음

38

▣ 지역여건을 반영한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 도입률이 낮은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 보다 지역별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은 도입률이 매우 낮으며, 대당 연 6,000만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지자체가 감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의 지속적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장애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 저상버스는 지자체의 재정력 약화로 차량구입 및 해당지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차, 정류장, 휠체어 등 접근하기 쉬운 정류장 시설 확충 필요
- BF(Barrier Free) 인증사업은 교통약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터미널, 관공서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39

▣ 교통약자 수요 맞춤형 서비스 지원정책 추진

- 교통약자의 80% 이상이 대중교통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복에 적합한 교통약자 유형별 이동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김원호, 이신해, 김시현, 2008)
- 맞춤형 정보를 유형별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교통 약자의 이동제약을 최소화 하고 교통약자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지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장애인 콜택시(STS)의 경우 체계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적인 공급을 줄일 수 있으며, 낙후된 소외지역의 벽지노선 운영의 경우, 초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비는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객관성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40

▣ 환경, 안전, 건강성을 고려한 교통복지정책 시행

- 환경, 안전, 건강성에 대한 고려는 교통복지가 단지 교통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임. 교통의 기본은 보행이며, 보행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음. 따라서 기본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리한 보행 여건 조성은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사회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행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안전성, 보행편리성, 대기오염, 소음 등 다양한 측면의 보행 여건 평가 및 개선 등 교통복지 정책을 꾸준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고용복지정책 진단 및 방향

함창모 미래전략실장(충북연구원)

* 본 발표문은 최은희 외(2016)의 '충북 복지정책 진단 및 방향'에서 일부 발췌함

1. 고용복지란?

□ 고용복지로서의 생산적 복지

- 생산적 복지는 복지와 연계된 고용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든스(A. Giddens)가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사회투자국가론을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제3의 길²⁾로 정치노선화 함으로써 고용복지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펼쳐나감
-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 의료보호 등 공적 부조의 확대에 따라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재정 악화와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사회현상이 발생하였으며, 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과도한 복지정책의 대안으로 생산적복지의 개념이 출현함
- 생산적 복지로서의 고용복지 정책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고용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용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 고용복지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

- 고용 취약계층의 범위는 고용지원사업 유형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서 고용 취약계층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고용복지 대상으로서의 취약계층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따르고자 함

2. 고용 현황

□ 충북지역 고용지표 총괄

2) 제3의 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제1의 길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제2의 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절충적 대안으로서 제3의 길을 지향하자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자는 것임 (사회복지용어사전)

<표1> 충북지역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전국	15세 이상 인구	42,096	42,513	43,017
	경제활동인구	25,873	26,536	26,913
	경제활동참가율	61.5	62.4	62.6
	취업자	25,066	25,599	25,936
	실업자	807	937	976
	고용률	59.5	60.2	60.3
	실업률	3.1	3.5	3.6
	15-64세 고용률	64.4	65.3	65.7
충북	15세 이상 인구	1,298	1,311	1,331
	경제활동인구	792	835	850
	경제활동참가율	61.0	63.7	63.9
	취업자	776	810	828
	실업자	16	25	22
	고용률	59.8	61.8	62.2
	실업률	2.1	3.0	2.6
	15-64세 고용률	65.2	67.5	68.4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표2> 충북지역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취업자	비율
전국 취업자	합 계	25,066	100.0	25,599	100.0	25,936	100.0
	비임금근로자	6,872	27.4	6,857	26.8	6,706	25.9
	자영업자	5,651	22.5	5,652	22.1	5,563	21.4
	무급가족종사자	1,221	4.9	1,205	4.7	1,144	4.4
	임금근로자	18,195	72.6	18,743	73.2	19,230	74.1
	상용근로자	11,713	46.7	12,156	47.5	12,588	48.5
	임시근로자	4,892	19.5	5,032	19.7	5,086	19.6
	일용근로자	1,590	6.3	1,555	6.1	1,556	6.0
충북 취업자	합 계	776	100.0	810	100.0	828	100.0
	비임금근로자	254	32.7	261	32.2	255	30.8
	자영업자	197	25.4	202	24.9	200	24.2
	무급가족종사자	57	7.3	58	7.2	55	6.6
	임금근로자	522	67.3	549	67.8	572	69.1
	상용근로자	343	44.2	350	43.2	373	45.0
	임시근로자	134	17.3	152	18.8	152	18.4
	일용근로자	44	5.7	47	5.8	47	5.7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연도.

□ 고령자

- 충북지역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하였음

<표3> 충북지역 고령자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전국	고령자 인구	6,145	6,406	6,669
	경제활동인구	1,927	2,045	2,087
	경제활동참가율	31.4	31.9	31.3
	고용률	30.9	31.3	30.6
	실업률 ^{주)}	1.8	2.3	2.5
충북	고령자 인구	225	231	238
	경제활동인구	77	82	81
	경제활동참가율	34.2	35.6	34.1
	고용률	33.9	34.9	33.4
	실업률	1.2	2.1	2.3

주 : 실업률은 6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료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청년층

<표4> 충북지역 청년층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전국	청년층 인구	9,548	9,503	9,486
	경제활동인구	4,124	4,255	4,335
	경제활동참가율	43.2	44.8	45.7
	고용률	39.7	40.7	41.5
	실업률	8.0	9.0	9.2
충북	청년층 인구	293	292	294
	경제활동인구	125	137	136
	경제활동참가율	42.6	46.9	46.1
	고용률	39.7	42.8	42.8
	실업률	6.8	8.8	7.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장애인

<표5> 전국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단위 : 명, %)

구분		2013	2014	2015
전국	장애인인구(15세 이상)	2,457,626	2,449,437	2,444,194
	경제활동인구	940,379	970,600	921,980
	경제활동참가율	38.3	39.6	37.7
	고용률	36.0	37.0	34.8
	실업률	5.9	6.6	7.9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표6> 장애인 장애정도 및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경활률	고용률	경활률	고용률	경활률	고용률
장애 정도	전 체	38.3	36.0	39.6	37.0	37.7	34.8
	중 증	21.5	19.2	24.8	22.7	20.8	18.4
	경 증	46.0	43.8	46.4	43.6	45.4	42.1
장애 유형	지체장애	46.8	44.8	48.6	45.7	47.1	43.7
	지체외 신체외부장애	12.3	11.2	13.1	11.8	11.8	10.4
	시각장애	43	39.3	45.7	42.6	40.7	37.6
	시각외 감각장애	35.5	34.0	34.5	31.7	35.3	32.8
	정신적 장애	23.9	19.9	25.1	23.2	21.4	18.4
	신체내부장애	24.2	22.1	26.6	24.2	24.8	22.8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 장애인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 임금보조 및 세제지원 등 금전적 지원이 21.1%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 17.6%
- 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창업지원, 고용여건 조성 등의 지원분야에 대한 정책수요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간접적 지원보다는 직접적 지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조사결과에 반영되었음

<표7>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욕구(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2015	
	추정 수	비율
전체	2,444,194	-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장애인 특별채용 등 취업지원	429,349	17.6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근로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138,560	5.7
직업능력개발훈련	67,296	2.8
장애인을 위한 별도 작업장 근로	113,181	4.6
금전적 지원(임금보조, 세제지원 등)	516,935	21.1
창업 지원(창업컨설팅, 창업정보 제공, 창업자금 융자 등)	58,538	2.4
차별금지, 인식개선 등 고용여건 조성	105,306	4.3
기타	8,398	0.3
특별히 없음	1,408,483	57.6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각 연도

□ 경력단절여성

<표8> 충북지역 성별 고용지표

(단위 :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국	15세 이상 인구	20,583	21,513	20,795	21,718	21,062	21,956
	경제활동인구	15,071	10,802	15,387	11,149	15,543	11,370
	경제활동참가율	73.2	50.2	74.0	51.3	73.8	51.8
	고용률	70.8	48.8	71.4	49.5	71.1	49.9
	실업률	3.3	2.9	3.6	3.5	3.7	3.6
충북	15세 이상 인구	640	658	648	663	660	671
	경제활동인구	459	333	480	355	487	364
	경제활동참가율	71.6	50.7	74.1	53.6	73.7	54.2
	고용률	70.1	49.7	71.9	51.9	71.7	52.8
	실업률	2.2	1.9	3.0	3.1	2.7	2.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우리나라 여성의 88.7% : 취업에 대해 긍정적
- 여성취업의 장애요인: 육아부담 50.5%, 30대 여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3. 고용복지정책

1) 충북 고용복지정책 총괄

□ 2016년 일자리 창출 비전 및 중점 추진전략

- 충북에서는 2016년 고용률(15~64세) 69.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 충북에서는 2016년 일자리창출 핵심전략 : 청년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주력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강화 제시

□ 부문별 일자리창출 목표

- 충북에서는 2016년 8만3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 목표를 수립
 - 재정투자 일자리 등 정부부문에서 6만3천여개, 기업유치 등 민간부문에서 2만여개를 창출하는 부문별 목표를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음
-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정부부문 2,656억원, 민간부문 318억원 등 총 2,974억원 규모로 정부부문 일자리 예산이 전체 예산의 89.3%를 차지함

<표9> 충북 부문별 일자리창출 목표

(단위 : 명, 천)

구분	2016 목표	예산 (백만원)					
		국비	시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총 계	83,165	171,651	48,999	75,601	1,120	297,371	
정부 부문	소 계	62,975	148,051	45,699	70,701	1,120	265,571
	직접일자리 창출	34,130	107,485	29,326	63,383	157	200,351
	직업능력개발훈련	4,820	8,022	1,311	49	412	9,794
	고용서비스	20,101	800	1,121	7,094	125	9,140
	고용장려금	55	-	420	-	-	420
	창업지원	330	-	372	-	-	372
	일자리인프라 구축	17	-	-	-	-	-
	기타 (산업)	3,539	31,744	13,149	175	426	45,494
민간 부문	소 계	20,190	23,600	3,300	4,900	-	31,800
	기업 유치, 신설, 확장	20,190	23,600	3,300	4,900	-	31,800

출처 : 충청북도(2016), 2016년도 충청북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 일자리창출 투자계획

- 총 2,974억원을 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자치단체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40,425억원 대비 7.4%
 - 일자리사업 예산(2,974억원) 중 지방비(1,257억원) 비중 41.9%
- 분야별로는 직접일자리창출사업에 총 예산의 67.4%에 해당하는 2,004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직접일자리창출사업 : 67.4%(2,004억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 3.3%(98억원)
 -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사업 : 3.3%(99억원)
 - 기타 일자리 산업부문 : 15.3%(455억원)
 - 기업 등 유치사업 : 10.7%(318억원)

□ 일자리창출 인프라 구축 현황 : 취업지원센터 등 17개 구축

2) 노인

□ 노인 고용복지정책 현황

- 충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안정적 노후소득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사업주체 : 시장군수 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 사업량 : 18,273명 (349억원)
 - 사업내용 : 국비보조사업인 공익형과 취업형, 도 자체사업으로 구분

<표10> 충북 노인 공공일자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공 익 형			취업형		도 자체사업	기 타 (전담인력, 인센티브)
		행복지킴이		공익활동 (9개월)	인 력 파견형	시장형		
		9개월	12개월					
일자리수	18,273	3,405	3,485	5,649	900	2,683	2,151	-
사업비	34,922	6,606	8,921	10,959	135	5,271	1,366	1,664

출처 : 충청북도 홈페이지.

- 노인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함

<표11>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유 형	참여자1인 예산지원 기준			
	활동 (월)	참여기간	부대경비 (원)	계
공익활동	20만원	9개월	14만원	194만원
	20만원	12개월	16만원	256만원
시장형사업단		연중	194만원 ~200만원	194만원 ~200만원
인력파견형		연중	15만원	15만원

출처 : 충청북도 홈페이지.

3) 청년

□ 청년 고용복지정책 현황

-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 : 청년정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취업지원 서비스 및 네트워크 활성화, 취업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 청년일자리 확대여건 조성 : 특성화고 및 취약계층 청년 취업지원, 대학생 취업 매직 프로젝트 운영, 2030잡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 추진
-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 청년 취창업 지원, 좋은 일자리 육성 및 고용 우수기업 지원, 능동적 인재 양성과 일 역량 강화 등

4) 장애인

□ 장애인 고용복지정책 현황

- 충북은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
산품 판매 활성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등
- 장애인 일자리사업 :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시각
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
-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 : 판매시설 운영, 기능경기대회 운영 중증장애
인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
- 기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1,72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을 보강
하는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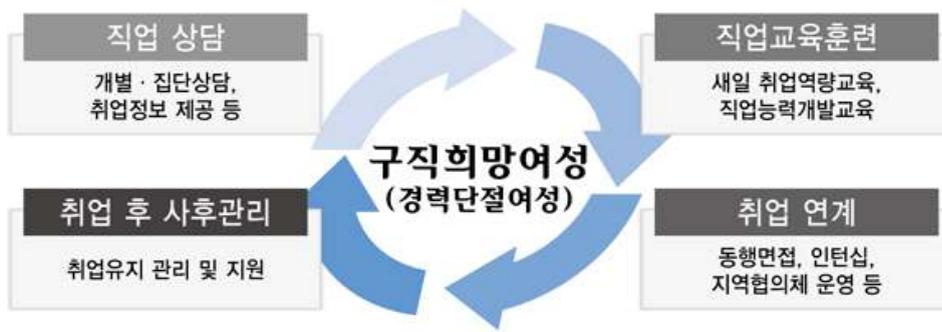
□ 장애인 일자리기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등 2개 유형으로 분류됨
- 2016년 3월 현재 충북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1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20개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 등 22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5)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고용복지정책 현황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용정책 지원예산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그림1>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주요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여성인력 양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등
- 여성새로일하기취업지원 인프라 강화 : 여성새일센터 등 운영 지원
- 여성 특성을 고려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군 순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 여성의 일자리 확충 및 고용유지 : 여성 직업교육, 직장적응 체험 지원,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의 사업 추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확산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경력단절여성 고용복지정책 지원기관

- 충북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에서는 광역형인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지역별 여성새일센터 및 취업정보센터가 여성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충북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기관은 광역 새일본부 1개소, 새일센터 5개소, 취업정보센터 7개소 등 1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4. 충북 고용복지 이슈

□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의존도 심화

- 충북 일자리공시제 추진계획의 경우 전체예산의 67.4%에 해당하는 2천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부부문일자리 목표 62,975명 중 54.2%에 해당하는 34,130명을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보육돌봄서비스,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실질적으로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

□ 저성장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최근 글로벌 저성장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 제조업에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고령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할 서비스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민간과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체계의 단절

-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와 민간분야 일자리사업 수행기관간 정보교류 및 업무적 연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어 지역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정책의 효율화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청년 고용정책의 경우에도 지역대학의 취업지원사업과 지자체의 청년 고용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청년 실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민간 위탁 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촌지역이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바, 농촌지역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고용 지원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일부 시군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시니어클럽 미설치 지역 :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미설치 지역 : 보은군,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지원시책 확대 필요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취업애로사항 1순위가 되고 있는 육아부담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 충북도 경우 고용정책의 중심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연계지원에 맞춰져 있어 육아부담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고용취약계층 공동체 일자리 확산 필요

- 현재 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 경제에 속한 많은 사업체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창출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확대되고 있음

5. 고용복지정책 방향

□ 고용전략 패러다임 전환

-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 인식
- 고용환경 변화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신규 일자리 총량 확대

-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및 상용직 일자리 확대
- 신규 서비스업 일자리 발굴 및 확대
-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 고용취약계층 경제활동 참여여건 개선

- 청년층 생활여건 개선 및 구직활동 지원
- 여성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경제활동 참여여건 개선
-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재취업 지원체계 강화

□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확산

- 사회적 경제 사업체 확산
-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경쟁력 강화

□ 정책대상별 고용서비스 안전망 확대

- 청년 미취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및 전문화
-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체계 확대
- 채용관행에서의 성차별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

□ 지자체 일자리 지원기관 역할 및 위상 강화

- 지자체 일자리 지원기관 역할 확대
- 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전문성 및 위상 강화

□ 일자리 상생 네트워크 내실화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인접 지자체간 일자리 협력망 구축 및 연계 강화

메모